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21 July 2020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1. OECD Update

너도나도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네이버, 카카오 세금부담 높아진다

(조선일보, 2020.06.24)

-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의 OECD 논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COVID-19 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으로 최근 여러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중.
-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권은 2~3%의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검토 중.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동구권은 4~7%의 높은 디지털세를 추진 중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수 아시아권 국가들도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원천징수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디지털서비스세가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세(Turnover tax)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결국 국내기업 추가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디지털세와 디지털서비스세의 차이:

디지털세: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세제도로서(법인세와 별도) OECD 및 G20가 2020년 말 합의를 통해 국제 공동의 디지털세 과세 체계를 마련할 예정.

디지털서비스세 ("DST"): EU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가별로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함으로써 온라인 광고, 데이터 판매 등 매출의 2~7%가량을 세금으로 부과

Model Rules for Reporting by Platform Operators with respect to Sellers in the Sharing and Gig Economy (2020.06.29)

현재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공유경제 / Gig Economy 관련 세제에 대한 OECD 표준 신고(Reporting) 지침 발표

1. 목적

- 플랫폼 사업자 소득 관련 정보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적시적 접근
- 신고 규정 표준화
- 과세당국 정보 수집 및 과세당국간 정보 교환 효율화
-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
- 직접세 외 다른 목적 세목(간접세, 지방세, 연금 등 관련)을 위한 신고 체계 구축
- 검증(Due Diligence) 이행 관련 기술 고도화
- 적합하고 효율적인 신고 범위 설정

2.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정보 검증(Due Diligence) 의무

- 플랫폼 사업자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기 판매자 관련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짐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 (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 (관세)

(Tel: 02-2112-7542)

- 특히 판매자 성명 또는 법인명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정부 제공 검증 시스템(존재하는 경우)을 통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 제3자가 이러한 검증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제3자에게 검증을 위탁할 수 있음, 하지만 검증 관련 의무 및 책임은 여전히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

3. 신고 양식 및 세부사항

-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역년(Calendar Year)의 다음해 1월 31일까지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게 신고
- 신고 양식은 최대의 표준화 및 호환성을 위하여 OECD에서 공개한 Standardized Extensible Mark-up Schema를 준수
- 플랫폼 사업자는 상기 명시된 정보에 대한 보관 및 이에 대한 검증 관련 기록을 보관
-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세제를 통해서 벌금 등을 부과할 것을 권고
- 플랫폼 사업자 및 판매자 소재 과세당국간 매년 자동정보 교환 권고

2. 국제조세/관세 Update

국제조세 최신 판례: 대법원2017두72935 (2020.6.25.)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등 (국패)

- 사실관계: 필리핀법인인 갑 회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회사와 카지노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의 카지노 영업장 중 일부 사무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함
- 결정요지: 갑 회사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 이더라도 고객 모집과 관리 등 갑 회사의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모집수수료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위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국한되며,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주장·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집수수료 전부가 갑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취소함

구글 코리아, 5천억 원 법인세 납부에 대하여 불복 (연합뉴스, 2020.07.09.)

서울지방국세청이 연초 구글 코리아에 대하여 추징 고지한 법인세 약 5천억 원에 대해, 구글 코리아는 당초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에 반발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하였습니다.

- 글로벌 IT 기업들은 서버가 국외에 있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은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관세 최신 판례 : 조심2019관0135 (2020.06.08) (결정유형: 기각)

- 결정요지 : 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부산세관장은 동일물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4년 서울세관장의 공적 견해표명에도 쟁점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3.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Italy: Tax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new mutual agreement procedures

이탈리아: 상호합의절차 규정 개정

이탈리아 입법부는 조세분쟁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EU 지침 2017/1852를 도입하는 법령, No. 49/2020(2020.06.10)을 제정하였습니다.

EU 지침과 이번에 제정된 법령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수관계기업의 소득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분쟁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및 자본 수익의 과세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신청된 모든 상호합의절차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상호합의절차의 범위는 EU 회원국 간의 조세조약 위반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EU 중재협약에서 규정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EU 중재협약은 이전가격 문제에만 적용되는 반면, 이번 법령으로 개정된 상호합의절차는 고정사업장 평가 및 원천징수세에 대한 분쟁 등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고, 해당 건이 이탈리아에도 영향이 미칠 경우, 이탈리아 내에서도 상호합의절차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 신청 건에 대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양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Vietnam: Taxation of e-commerce, withholding rules effective in 2021

베트남, 2021년 전자상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시행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하여 베트남에 재화와 용역 판매하는 해외 비거주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를 시행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모델을 통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활동이 기존 베트남 세법 체계의 영역을 벗어남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신설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향후 “비거주 전자상거래 기업(non-resident e-commerce business)”의 수익에 원천세가 적용되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의해 과세대상 수익이 원천징수 될 예정입니다. 해당 원천세는 법에서 지정하는 모든 B2C 및 B2B 거래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은 신설 규정에 해당되는 대상거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구체적인 방법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대상거래에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세율을 참조하여 각 사례별 거래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즉, 본 원천세는 가변적이며 약 2% - 5%의 부가가치세와 약 1 - 10%의 법인세로 구성됩니다. 세무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본 접근법은 과도한 원천세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의 이용약관을 새로 업데이트 하여 새로운 원천징수 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 베트남 정부는 본 원천징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IT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PMG 의견

본 원천세 관련 신설 규정은 기존 외국인계약자세(FCT) 규정에서 확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절차상 금융기관이 관여하게 되는 경우 기존 FCT 규정은 크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본 원천세 규정은 비거주 전자상거래 기업에 사업자등록(tax registration)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등록 절차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만, 원천세율, 세액산출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기업은 원천세가 과다하게 부담되었을 경우 초과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본 규정에 해당되는 과세대상거래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원천세와 조세조약과의 관계도 적용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본 신설 규정이 기존 취지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 규정이 디지털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관련 IT 법인을 대상으로만 과세할 것처럼 보이지만 특수관계거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별적인 디지털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원천세 규정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과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Postponed deadlines for TPD reporting \(COVID-19\): Poland, Panama](#)

[Poland](#)

폴란드, COVID-19으로 인한 TPD 제출기한 연장

폴란드 정부는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이전가격보고서 및 이전가격 관련 정보를 포함한 TPR-C 서식 및 TPR-P 서식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연장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제출기한이 2020년 3월 31일 – 2020년 9월 30일 사이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출
- 기존 제출기한이 2020년 10월 1일 – 2021년 1월 31일인 경우 기존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

본 법안은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에 첨부하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의 구비 기한 또한 3개월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사업연도를 가진 회사의 각 서식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구비,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및 TP-R 서식 제출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구비 및 첨부 기한은 2021년 3월

31일입니다.

Panama

파나마, COVID-19으로 인한 TPD 제출기한 연장

파나마 정부는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이전가격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 사업연도 회사의 경우 2019년 사업연도 대상 특수관계거래를 분석한 이전가격보고서의 제출기한은 2020년 9월 30일입니다.

COVID-19은 이전가격 분석에서 고려하는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COVID-19의 영향을 받은 회사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화할 경우 세무조사시 회사의 상황을 설명할 때 유용하며 세무당국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다 수월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료는 판매 감소, 중단 사업, 인력 감축, 유희설비 증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가격 분석의 수익성지표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비용 중 COVID-19으로 인해 발생한 비경상적인 일회성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제분석의 경우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한 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비교대상회사를 찾아야 하며 필요시 비교가능성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고려요소는 최근 몇 달 동안의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라 그룹 내 내부거래 계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차거래의 계약조건을 최근 금리변동에 따라 재협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COVID-19으로 인한 실질을 반영하고 그룹의 부담위험을 재분배하기 위해 이전가격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COVID-19 사태로 인해 사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회사와 과거 사업연도에 선정된 비교가능회사의 기능, 위험 및 자산 변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ndia: Section 10A tax benefit and additional income from MAP

인도, 소득세법 제10A조에 따른 세제혜택 및 MAP 추가 소득

Bangalore 소득세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판례를 통해 상호합의(이하 "MAP") 결과에 따라 증대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 10A 조에 따른 세제혜택의 적용을 허용한다고 새롭게 판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추가소득에 대한 사후적인 세제혜택의 적용을 부인했으나, 재판부에서는 금번 판결을 통해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결정된 추가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도 소득세법 제 10A 조는 인도 자유무역지역 내 신규 사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수출 매출 100%를 전체 매출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해당 판례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ll International Services India Pvt. Ltd. (이하 "납세자")는 다국적 그룹 내 법인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평가대상연도 2007-2008 동안 콜센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았습니다.
- 이전가격조사관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비해 대가를 과소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전가격조정을 통해 납세자의 총 소득에 과소수취분을 가산하였습니다. 납세자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미국 소재 특수관계인은 납세자와 납세자의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결정을 위해 MAP 을 신청했습니다.
- 미국과 인도의 권한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 "CA")는 납세자가 미국 소재 거주법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취한 비용에 대한 적정 이윤(mark-up)에 대해 상호합의를 도출했습니다. MAP 합의안에 따라 납세자의 수출 소득은 증가했으며, MAP 조항에 따라 평가인은 MAP 합의내용은 인정하되, MAP 합의안에 따른 수출 소득 증대에 대한 소득세법 제 10A 조의 세제혜택은 부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MAP 합의안에 의거하여 조정된 금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제 10A 조에 따른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